

문서번호	행정지원과-35479
결재일자	2014.12.17.
공개여부	부분공개

주무관	인사담당	행정지원과장	행정국장	부구청장	
전영훈	윤이남	김진동	손정수	12/17 김병환	
협 조	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담당 주무관		이용식 김용환 김하연		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-  
**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 개정계획 (안)**



**2014. 12.**

**행 정 국  
 행정지원과**

# - 서울특별시 성북구 -

##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 개정계획 (안)

2015. 1. 1 자 시행예정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, 정원규칙과 조직개편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
### I 추진 근거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- 수요자 중심의 조직개편 계획 [행정지원과 - 29014(2014.10.16)]

### II 주요개정 내용

- 본청, 의회사무국, 직속기관, 동 주민센터 정원을 조직개편 사항과 일치되도록 변경
  - 5급 : 조직개편 반영(복지부서 확대개편 및 지소장 직급 하향)
  - 6급 : 평주사 동 분산 등 현행화
  - 7급·8급·9급 : 동 사회복지직 증가분 반영 및 현행화

※ 총 정원수(1,391명)는 변동없음

## ⇒ 기관별 증감현황

구분	총계	본청	의회사무국	직속기관	동
총계	1,391	925	29	124	313
정무직 계	1	1			
일반직 계	1,384	922	25	124	313
3급 소계	1	1			
4급 소계	7	5	1	1	
5급 소계	65	30 /31	2	13 /12	20
6급 소계	259	199 /180	3	16	40 /60
7급 소계	450	309 /290	9	33	98 /118
8급 소계	401	260 /300	6	36	99 /59
9급 소계	201	116 /115	4	25 /26	56
기타	6	2	4		

## Ⅲ 행정 사항

● 입법예고 : 정원규칙의 내용이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고, 2015.

1. 1자로 시행하여야 하는 등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4조(입법예고 대상)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함

제4조(입법예고 대상)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.

1.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
2.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
3.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

●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: 12. 19(금) < 예정 >

- 붙임 1)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  
2) 부서별 동별 정원 현황 1부. 끝.